

경기도 고시 제2021-5180호

평택 추팔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추팔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11. 5.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변경없음)

가. 관리기관 :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 산업시설구역 중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이하 “임대단지”라 한다.)의 임대관리(경기도시공사)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수도권내 이전대상업체 유치로 공업기반 활성화
- 지역공업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다. 추진경위(변경있음)

- 1986.07.15. : 수도권정비 시행계획 개발유도권역 안의 개발계획 결정(건교부 고시 제306호)
- 1993.11.12. : 추팔지방공업단지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1993-386호)
- 1994.04.02. : 추팔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1994-88호)
- 1994.09.12. : 추팔지방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4-253호)
- 1996.05.07.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6-98호)
- 1996.11.08.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6-303호)
- 1998.07.09. : 추팔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95호)
- 1998.12.3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8-529호)
- 2000.12.18. : 개발사업 준공(경기도 공고 제2000-496호)
- 2003.09.30. :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경기도 고시 제2003-241호)
- 2004.06.21. :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경기도 고시 제2004-185호)
- 2013.04.05. : 추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 고시 제2013-90호)
- 2014.12.12. : 평택 추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 고시 제2014-5180호)
- 2020.12.15. : 평택 추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 고시 제2020-5246호)

라. 분양(임대)현황(변경없음)

(단위:㎡)

구 분	분양대상	분양현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계	분양	미분양		
계	449,913.8	449,913.8	449,913.8	-	'94 ~ '00	평택시
산업 시설 구역	소계	414,146.8	414,146.8	-		
	분양	325,170.7	325,170.7	-		
	임대	88,976.1	88,976.1	-		
지원시설구역	35,767.0	35,767.0	35,767.0	-		

마. 입주현황(변경없음)

경 기 도 보

제6864호

2021. 11. 5. (금)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41	40	1	414,146.8	411,829.5	2,317.3
2020. 09월말현재	41	40	1	414,146.8	411,829.5	2,317.3
향후계획	-	-	-	-	-	-

바. 입지여건(기본시설)(변경없음)

시 설 명	총계획	비 고
단지내도로(m)	5,677	
용수(㎡/일)	7,376	
전력(mvh)	80,032	
통신(회선)	1,765	
폐수처리(㎡/일)	20,000	
폐기물매립장(㎡)	19,600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 수도권정비 및 공업재배치에 의한 내국인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는 혼용방식을 채택하여 공단용지를 분양단지와 임대단지로 구분 관리하고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변경없음)

1) 용도별 구획면적(변경없음)

(단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609,999.2 (100%)	414,146.8 (67.9%)	35,767 (5.9%)	115,427.2 (18.9%)	44,658.2 (7.3%)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2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용

가) 산업시설구역

- ① 「산업집적법」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업(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의 옥외 부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 ①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동법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 ② 산업집적법 제44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 ④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업(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제21조 규정에 의한 태양에너지 발전업(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다) 공공시설구역

- 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부지 입주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경 기 도 보

제6864호

2021. 11. 5. (금)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태양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옥외부분에 한함)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1

다. 업종별 배치 계획(변경없음)

1) 업종별 배치 현황

(단위 : m², 개사)

구 분	업 종	업체수(개사)	면적(m ²)	비 고
계	-	41	414,146.8	
분양단지	“라”의 입주업종 규정에 의한	31	325,170.7	
임대단지	“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 규정에 의한	10	88,976.1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라. 입주관리계획(변경있음)

(기정)

1) 입주대상업종 : 전 제조업

다만, 아래의 환경저해 업종을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입주제한업종	세부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종(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 4종, 5종 업종 허용 ※ 기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의3 사업장 분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발생량의 증가(종별 상향)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설, 변경 허용(최근 배출신고(허가)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규정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 단,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서 정하는 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종(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폐수배출량 700m³ 이상인 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 규모별 구분 제3종, 제4종, 제5종 업종 허용 ※ 기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폐수 배출량의 증가(사업장의 규모별 종 상향)가 없을 경우 증설, 변경 가능(최근 배출신고(허가)된 1일 폐수배출량 기준) ○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공업용수 사용업체, 환경관련 민원발생 다수업종 등, 레드믹스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종 시설변경, 증설, 신규입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종 및 생산공정상 염색, 주물, 도금, 염료, 안료, 피혁, 날염, 표백, 도장 등 공해 다발업종 및 용수다소비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제한 및 증설 제한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키는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 및 제6호 외 레미콘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평가에 해당하는 비발암성 물질, 발암성 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발암성물질(염화수소, 수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발암성물질(비스, 카드뮴, 6가크롬, 니켈, 벤젠) 제한

나) 임대단지 : “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 규정에 의한

※ 단, 분양단지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변경)

1) 입주대상업종 : 전 제조업

가) 분양단지 : 아래의 환경저해 업종을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경 기 도 보

제6864호

2021. 11. 5. (금)

입주제한업종	세부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종(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 4종, 5종 업종 허용 ※ 기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의3 사업장 분류기준 중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발생량의 증가(종별 상향)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설, 변경 허용(최근 배출신고(허가)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 ※ 기존 입주기업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의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증기 등을 해당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됨 [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규정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 단,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서 정하는 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종(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인 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 규모별 구분 제3종, 제4종, 제5종 업종 허용 ※ 기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폐수 배출량의 증가(사업장의 규모별 중 상향)가 없을 경우 증설, 변경 가능(최근 배출신고(허가)된 1일 폐수배출량 기준) ○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공업용수 사용업체, 환경관련 민원발생 다수업체 등,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종 시설변경, 증설, 신규입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종 및 생산공정상 염색, 주물, 도금, 염료, 안료, 피혁, 날염, 표백, 도장 등 공해다발업종 및 용수다소비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제한 및 증설 제한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 시키는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 및 제6호 외 레미콘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평가에 해당하는 비발암성 물질, 발암성 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발암성물질(염화수소, 수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발암성물질(비소, 카드뮴, 6가크롬, 니켈, 벤젠) 제한

나) 임대단지 : “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 규정에 의함

※ 단, 분양단지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2) 입주자격(변경없음)

가) 산업시설구역

- 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 ①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의 옥외부분에 한함)

3) 삭제(변경없음)

4) 입주절차(변경없음) : 용지분양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허가 → 공장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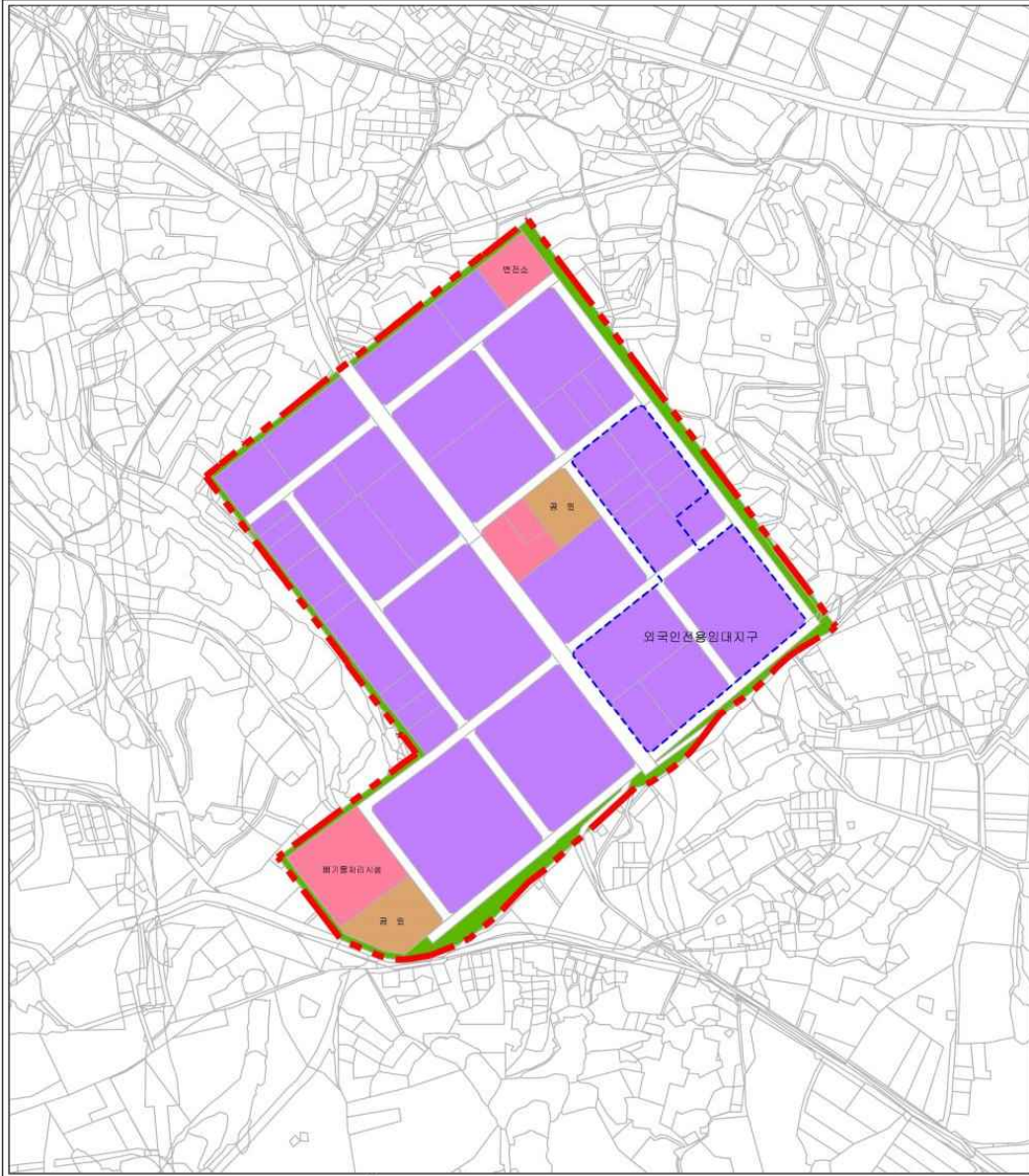
마.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1) 분양용지의 관리 :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추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 의거 관리
- 2) 환경관리
 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나) 입주업체는 기업체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바.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기본방향
 가)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통신, 금융, 보험, 후생, 의료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6항, 제21조제2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도모
- 2) 지원시설 설치계획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① 지원시설용지 : 35,767㎡
 ② 지원시설설치계획 : 금융, 복지·후생,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나) 폐수처리계획
 ① 단지 내 발생폐수(약 6,786㎡/일)는 팽성 시가지 생활오수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팽성 하수도 계획에 반영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입주업체에서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 위치 : 팽성읍 신궁리
 - 처리용량 : 20,000㎡/일
 다)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① 총 발생량(매립대상) : 2,417.6톤/년
 ② 처리계획
 - 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 폐기물 처리
 - 매립장 면적 : 19,600㎡
 라) 공업용수 공급계획 : 단지 내 공업용수는 기존의 팽성 배수지(기존 2,500㎡, 4,000㎡)를 이용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인입하여 공급
- 사.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1) 입주대상업종(변경없음)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생산업종
 다)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가 큰 일반제조업종(프로젝트매니저 추천, 입주자 심의위원회 심의)
- 2) 입주자격(변경없음)
 가)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30%이상인 합작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나)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 3) 입주한도(변경없음)
 가) 입주기업이 이행하여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되, 적용 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면적률을 적용

- ※ 기준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 면적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 나)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면적에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 시점부터 부과함.
- 다) 임대면적 한도 : 미화 100만불 당 3,305㎡ 이하
- 라) 최소임대 기준면적 3,305㎡ 이상(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50%범위내 완화적용가능)
- 4) 사후관리(변경없음)
- 가) 임대료 :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 장관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 ① 부지가액의 1% 이상/년
- ② 부지가액의 5% 이상 /년 : 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금액 미이행자,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 ※ 부지가액은 최다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 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달리 고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③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 시 수탁기관에 납부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지가액의 5% 이상으로 하고 갱신계약 체결연도의 임대보증금 역시 5% 이상으로 함. 다만, 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 시 50%를 감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한도내에서 분납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가능.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부지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 ④ 임대료 감면 : 입주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내지 제9항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의한 토지소유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면
- 나)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해지
- ①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시. 다만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함.
- ②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지침 제15조에 따른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때
- ③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 ④ 입주기업의 부지 또는 건물을 임의처분하거나,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 ⑤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 시
- ⑥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소가여 1년 이상 사업활동휴지
- ⑦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미이행 또는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기타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법령·조례 등 위반한 경우
- 5) 기타(변경없음)
- 가)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체결업체는 추팔 임대단지에 입주하기 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관리기관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함.
- 나) 기타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 지침, 해당 임대단지를 포함한 추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다) 2014년 8월 22일 이전에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5조 규정에 따른 입주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금번 관리기본계획 변경 이전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한도 완화에 불구하고 추가부지 요청시 종전 계약에 따라 이미 투자된 외국인투자이행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별첨1) 용도별 구획평면도(변경없음)



**주팔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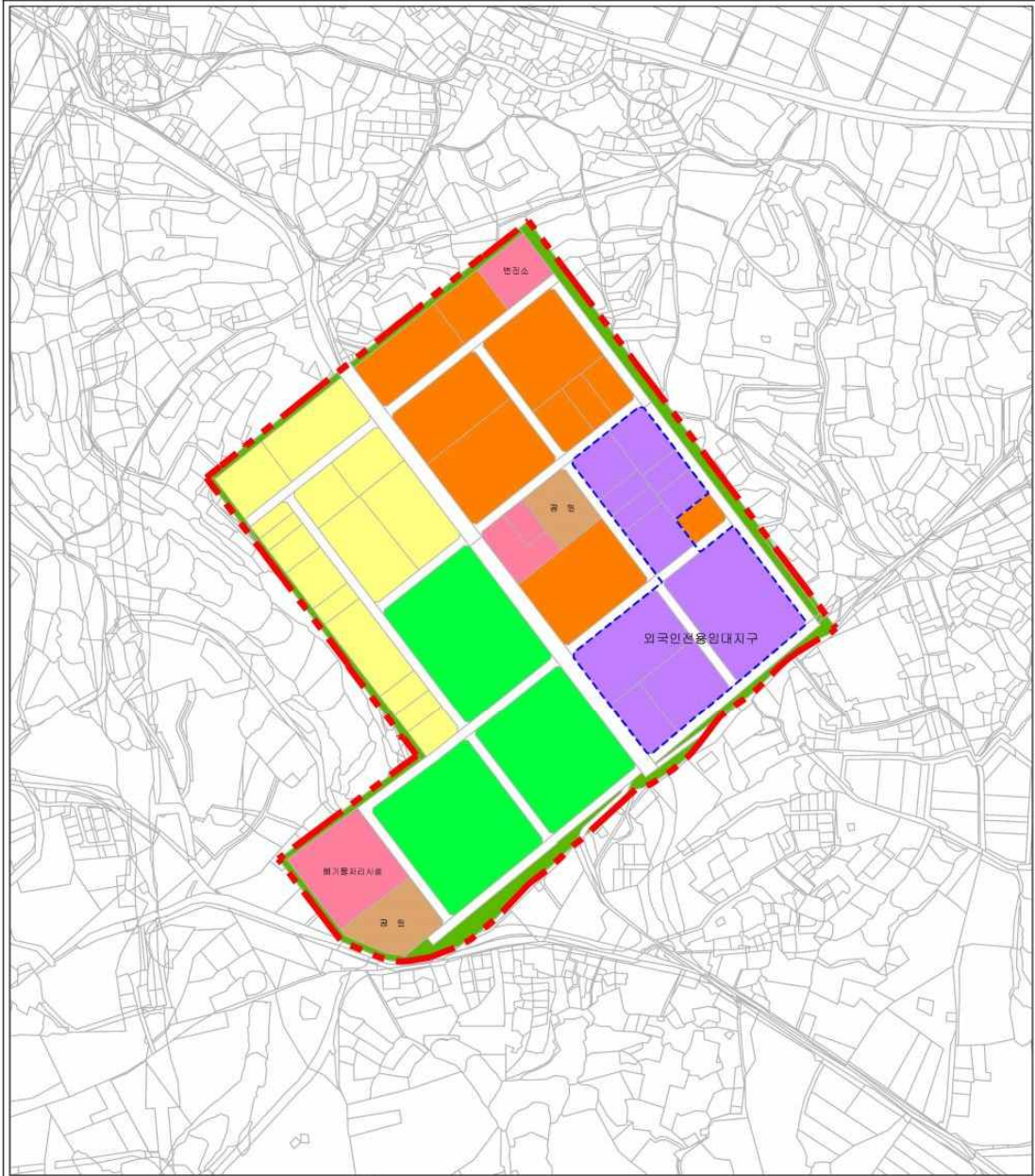
S = 1 : 3,000



범례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별첨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없음)



**추팔일반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

S = 1 : 3,000



범 례

- 섬유·의복
- 음식·식품
- 나무·목재
- 외국인임대지구
-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경 기 도 보

제6864호

2021. 11. 5. (금)

[별표1] 입주제한업종(변경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중분류 25개 업종(10~34) 중 10개 업종(12, 13, 14, 15, 16, 17, 18, 19, 23, 24)을 입주제한 함.
- ※ 중분류 13 중 마스크제조업(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허용
- 입주제한업종(세분류)

분류번호	업종명	분류번호	업종명
1011	도축업	2032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2050	합성섬유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031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 입주제한업종(세세분류)

분류번호	업종명	분류번호	업종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 ※ 이 외의 입주제한 업종 결정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판단하여 입주가 가능 여부 결정
- ※ 위의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존 입주기업체의 신설·증설을 제한함
- 입주제한 세부사항(변경)

입주제한업종	세부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종(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 4종, 5종 업종 허용 ※ 기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의3 사업장 분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발생량의 증가(총별 상향)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설, 변경 허용(최근 배출신고(허가)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 ※ 기존 입주기업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의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폐증기 등을 해당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됨 [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서 규정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 단,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서 정하는 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종(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인 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 규모별 구분 제3종, 제4종, 제5종 업종 허용 ※ 기존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폐수 배출량의 증가(사업장의 규모별 총 상향)가 없을 경우 증설, 변경 가능(최근 배출신고(허가)된 1일 폐수배출량 기준) ○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공업용수 사용업체, 환경관련 민원발생 다수업종 등, 레미콘제조업체를 생산하는 업종 시설변경, 증설, 신규입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업종 및 생산공정상 연색, 주물, 도금, 염료, 안료, 피혁, 날염, 표백 등 공해 다발업종 및 용수다소비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제한 및 증설 제한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 및 제6호 외 레미콘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평가에 해당하는 비발암성 물질, 발암성 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발암성물질(염화수소, 수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발암성물질(비소, 카드뮴, 6가크롬, 니켈, 벤젠) 제한